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·의·장

제 63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6.26(금)

## 공 고

-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공시송달 공고.....1
-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.....3
-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.....5
- 도로지정 공고.....12
-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공시송달 공고.....1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전북 남원시 공고 제 2015 - 829호

공 시 송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 『공매대금 배분계산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6월 26일

남 원 시 장

- 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
- 2. 공 고 기 간 : 2015.06.26. ~ 2015.07.10
- 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- 4. 서 류 의 내 용
 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  -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(예정), 이의신청기일 통보

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●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●

붙임

###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성명	자동차번호	주소	사유	비고
신*기업(주)	33*4073	김해시 주촌면	이사감	

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5 - 830호

# 공 시 송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『공매통지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6월 26일

## 남 원 시 장

- 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
- 2. 공 고 기 간 : 2015. 06. 26. ~ 2015. 07. 10
- 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- 4. 서 류 의 내 용
 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  -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

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●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●

붙 임

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성 명	주 소	사 유	자동차	비고
장*식	남원시 송동면	이사감	95*1487	

남원시 공고 제2015 - 831호

**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**

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5. 6 . 26 .

남 원 시 장

**1. 조례명 :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

**2. 제안이유**

『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주민참여 및 협의체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안제6조)
- 라.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, 업무에 관한 사항  
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마.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사업추진협의회 관한 사항  
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- 바.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금액 환수, 용자의조건에 관한 사항  
(안 제11조부터 및 안 제13조까지)
- 사.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5년 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도시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(전화 620-6452 FAX 620-67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.주소.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공동이용시설)**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마을공동이용관리 및 편의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
2.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,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3. 마을공동텃밭,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

**제3조(주민의 참여)**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,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**제4조(주민협의체)**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



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도시재생위원회)**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남원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)**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

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
2.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

**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)**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 
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

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 
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 
다.

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 
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,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  
를 위탁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 
따른다.

**제8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)**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“조례로 정하는 업무”는  
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
2. 주민협의체 지원
3. 지역문화재단, 자활센터,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  
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
4. 빈 점포·상가의 신탁, 공동육아 및 돌봄, 지역축제 등 주민·지역상인 등이  
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  
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
5.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
6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

**제9조(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)**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업추진협의회)**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상공회의소,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,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,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.

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,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,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도시재생사업 지원)**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지원금액의 환수)**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 「남원시 지방보

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13조(용자의 조건)**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·이율 및 연체이자, 조건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.

**제14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**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: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×(1+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÷원래의 대지면적) 이내
2. 문화유산 등의 보호, 도시경관, 환경정비,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

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◎ 남원시 공고 제 2015 -837호

도 로 공 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6월 26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15-8	남원시 내척동 127-1(답)	윤창희	2015-건축과- 신축신고-200	244.7	3	873	남 원 시 내 척 동 111-2, 112-1, 124-1, 산 131-4 , 산 131-5 , 산 132-3 , 산 133-2	873	국(철도청), 국(농림축산식품부)

전북 남원시 공고 제 2015 - 838호

# 공 시 송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 『공매대금 배분계산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6월 26일

# 남 원 시 장

- 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
- 2. 공 고 기 간 : 2015.06.26. ~ 2015.07.10
- 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- 4. 서 류 의 내 용
 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  -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(예정), 이의신청기일 통보

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●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●

붙임

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성명	자동차번호	주소	사유	비고
안*식	33*4073	부산 사하구	폐문부재	